# 약 정 서

#### - 전 문 -

- 1. 한화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갑")은 "한화미국호주PPP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2호" (이하 "이 건 투자신탁")를 설정하여, 미국 및 호주 내 다양한 인 프라 자산을 보유중인 Aberdeen Global Infrastructure Partners LP에 대출하는 방식으로 투자하고, 이를 일정 기간 운용하는 방법으로 이 건 투자신탁을 운용하며, 이와 관련하여 환위험 및 금리위험을 헤지할 목적으로 이 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주식회사 국민은행 (이하 "을")과 사이에 ISDA 1992 Master Agreement (이하 "기본계약서")에 근거한 통화스왑거래 또는 통화선도거래(이하 "통화스왑/선도거래") 확인서의 작성을 통하여 통화스왑계약 또는 통화선도계약(이하 "통화스왑/선도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 2. "갑"과 "을"은 통화스왑/선도계약상의 채무(계약의 해지 또는 기한 전 거래 종료 시 이 건 투자신탁이 지급하여야 할 최종청산잔액 등 포함)의 이행과 관련한 이 건 투자신탁의 자금 부족에 대비하고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2021년 5월 14일 이 약정서를 체결한다. 또한, 이 건 투자신탁과 관련하여 기 체결한 그리고 향후 체결하는 모든 통화스왑/선도계약에 관해서도 이 약정서를 적용하기로 한다.

- 아 래 -

## 제1조 (자금 부족에 대한 "갑"의 통지 의무)

"갑"은 이 건 투자신탁을 운용함에 있어 이 건 투자신탁(또는 그 신탁회사)이 본통화스왑/선도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이 건 투자신탁의 수익자들에게에게 해당 사유의 발생경위, 해당 채무액(이하 "자금 부족액")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갑"은 이 건투자신탁의 수익자들에 대하여 위 통지서를 송부하는 동시에 해당 통지서를 "을"에게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통화스왑/선도계약에 따른 계약이행 책임은 이 건투자신탁에 귀속되며, 그 책임은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한다.

## 제2조 ("갑"의 추가 투자 요청)



- 1. 제1조의 통지와 동시에 "갑"은 이 건 투자신탁의 수익자들에게 2021년 4월 2일 체결한 "한화미국호주PPP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2호 투자자약정서" 제3조(수익증권의 매입)에 따라 자금 부족액에 대한 추가 투자를 요청(Capital Call)하여야 한다. 이러한 추가 투자 요청은 이 건 투자신탁의 수익자들의 추가 투자에 의하여 통화스왑/선도계약의 정상 결제가 가능하도록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
- 2. 만일 "갑"이 제1항의 추가 투자 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 "을" 은 "갑"에게 적절한 추가 투자 요청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갑"은 이를 즉시 이행하여야한다.

#### 제3조 (추가 투자금의 사용 제한)

- 1. "갑"은 제2조에서 정한 추가 투자 요청을 포함하여 이 건 투자신탁의 추가 설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2. "갑"은 제2조에 따라 추가 투자 요청을 하여 이 건 투자신탁의 수익자들로부터 추가 투자 받은 이 건 투자신탁의 자금을 본 통화스왑/선도계약상 이 건 투자신탁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3. "갑"은 향후 이 건 투자신탁의 투자금액 회수 시 "을"에 대하여 계약기일(만기일, 조기상환일 포함)이 도래한 이 건 투자신탁의 통화스왑/선도거래를 우선적으로 정산 결제한다.

#### 제4조 (투자지분의 양도)

이 건 투자신탁의 어느 수익자가 그가 보유한 수익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수인은 별첨 1 "양수인확약서 양식"에 따라 작성된 양수인확약서를 집합투자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갑"은 양수인확약서를 첨부하여 "을"로부터 서면에 의한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양수인이 별첨 2 "양수도 사전동의 기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을'은 사전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5조 (이 약정서의 효력)

1. 한화미국호주PPP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2호 투자계약서, 통화스왑/선 도계약 거래확인서 및 이 약정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이 건 통화스왑/선도 거래에 관하여는 이 약정서가 우선하여 적용된다.



2. 이 약정서는 약관 또는 계약 등 그 형태를 불문하고 기존의 "갑" 과 "을"사이의 어떠한 합의 또는 약정에도 우선하며, 그러한 기존의 합의 또는 약정의 내용 가 이 약정서의 내용 간에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경우 기존의 합의 또는 약정은 그러한 부분에 한하여 이 약정서에 의하여 변경된 것으로 본다.

3. "갑" 과 "을"은 그 상대방을 불문하고 어떠한 다른 합의 또는 약정을 이유로 이약정서에 의한 의무의 이행을 거절하거나 지체할 수 없다.

#### 제6조 (진술 및 보장)

"갑"과 "을"은 이 약정서 약정일 현재 각자 다음의 각 사항을 진술하고 그 내용의 진정함을 보증한다.

1. 이 약정서를 체결하고 이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능력과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2. 이 약정서 체결 및 약정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내부 수권절차(이사회결의, 투자심의승인 등)를 거쳤음을 확인한다.

3. "갑"은 이 약정서를 체결한 이후 "을"의 사전 동의 없이는 제3조의 "한화미국호 주PPP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2호 투자계약서"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 한다.

#### 제7조 (준거법 및 관할)

이 약정은 대한민국법에 의하여 해석되고 규율 되며, 이 약정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아래 당사자들은 이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각자 기명 날인 한 다음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2021년 5월 14일

【별첨 1: 양수인확약서 양식 】

【별첨 2 : 양수도 사전동의 기관 】



(당사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은 다음 면에)

아래 당사자는 이 약정서 2 부를 작성하여, 각자 기명 날인 한 다음 각 1 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갑"

한화자산운용 주식회사 ("한화미국호주PPP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2호"의 집합투자업자로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50 한화금융센터

대표이사 김 용 현



아래 당사자는 이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각자 기명 날인 한 다음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을"

### 주식회사 국민은행

("한화미국호주PPP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2호"의 스왑은행으로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26

대표이사(은행장) 허 인 위 지배인 파생상품영업부장 유 한 종





#### 【별첨 1: 양수인 확약서 양식】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귀사") 귀중

본 확약서는 수익자들, 자금보충기관, 집합투자업자 사이에 2021년 4월 2일자로 체결된 "한화미국호주PPP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2호 투자자약정서" (이하 "본 약정")와 관련됩니다. 본 약정에서 정의된 용어들은 본 확약서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않는 한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당사는 투자자 [\*] (이하 "양도인")(으)로부터 양도인이 보유한 집합투자기구의 수 익증권 [\*\*\*\*]좌 (지분비율 [\*\*]/[\*\*] (\*\*%)를 양수한 자로서, 본 확약서에 의하여 다음 사항에 동의하고 이를 확약합니다.

- 1. 당사는 본 확약서에 의하여 본 약정의 당사자가 됨을 인정하며, 본 약정의 원 래 당사자인 투자자들과 같이 본 약정의 모든 조항 및 조건에 구속될 것임을 동의하고 이를 확약합니다.
- 2. 당사는 본 약정에 따른 양도인의 모든 의무(본 약정 제2조에 따른 수익증권 추가매입의무를 포함하나 이에 한하지 않음)를 아무런 조건 없이 인수할 것임 을 동의하고 이를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양수인의 상호]

성명:

직위:

주소:



【별첨 2: 양수도 사전동의 기관】

구 분	사전동의 기관
연기금 <sup>1)</sup> (54개)	고용보험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공무원연금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국민연금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국유재산관리기금, 군인복지기금, 군인연금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남북협력기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농지관리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보훈기금, 복권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사학진흥기금,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수산발전기금, 양곡증권정리기금, 양성평등기금, 영화발전기금, 외국환평형기금, 원자력기금, 응급의료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주택도시기금,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축산발전기금, 한강수계관리기금,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공제회 (21개)	건설공제조합,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축사공제조합, 경찰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교정공제회, 군인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소방산업공제조합,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자본재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정보통신공제조합, 한국교육안전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행정공제회

중앙회 (9개)	농협중앙회, 농협은행,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중앙회, 수협은행,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노란 우산공제등 공제사업 포함)
금융관련 공공기관 및 공사(8개)	예금보험공사, 우정사업본부,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증권금융, 한국투자공사
보험사 (25개)	교보생명보험,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 동양생명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미래에셋생명보험, 삼성생명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서울보증보험, 신한생명보험, 아이비케이연금보험,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케이디비생명보험, 푸르덴셜생명보험, 푸본현대생명보험, 하나생명보험, 한화생명보험, 한화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흥국생명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DB생명보험,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KB생명보험
증권사 (17개)	교보증권, 대신증권, 메리츠종합금융증권, 미래에셋대우증권, 삼성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아이비케이투자증권, 유안타증권, 케이비증권, 키움증권, 하나금융투자,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현대차증권, NH투자증권
여신전문 금융회사 (11개)	디지비캐피탈, 메리츠캐피탈, 미래에셋캐피탈, 비엔케이캐피탈, 산은캐피탈, 신한캐피탈, 아이비케이캐피탈, 엔에이치농협캐피탈, 하나캐피탈, JB우리캐피탈, KB캐피탈

